

의안번호	제 177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3년 1월 4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7
----------	-----

제출연월일 : 2023년 1월 4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기 이전 부서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우리 도 자치법규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사항 개정>

- 자치행정과장 → 도민소통과장(안 제1조)
  -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 총무과 → 행정운영과(안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11조)
  - 충청북도 공인조례
  - 충청북도 도민대상 조례
  -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 행정부지사 → 경제부지사, 기획관리실장 → 과학인재국장(안 제3조, 제7조)
  -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조례
- 자치행정과장 → 행정운영과장(안 제6조)
  - 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
- 기획·행정·경제·복지·문화 관련 실·국장 → 과학인재국장·행정국장·경제통상국장·보건복지국장·문화체육관광국장(안 제8조)
  -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 총무과장 → 행정운영과장 또는 인사혁신과장(안 제9조)
  - 충청북도 포상조례
- 유기농산과장 → 스마트농산과장(안 제10조)
  -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도민소통과장”으로 한다.

제2조(「충청북도 공인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총무과에”를 “행정운영과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운영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무과에”를 “행정운영과에”로, “총무과가”를 “행정운영과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운영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운영과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운영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총무과장”을 각각 “행정운영과장”으로 한다.

제3조(「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과학인재국장”으로 한다.

제4조(「충청북도 도민대상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도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운영과장”으로 한다.

제5조(「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운영과장”으로 한다.

제6조(「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운영과장”으로 한다.

제7조(「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리실장”을 “과학인재국장”으로 한다.

제8조(「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기획·행정·경제·복지·문화 등 관련 실·국장”을 “과학인재국장,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보건복지국장 및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제9조(「충청북도 포상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총무과장으로 한다”를 “행정운영과장 또는 인사혁신과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10조(「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의 개정)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유기농산과장”을 “스마트농산과장”으로 한다.

제11조(「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총무과장에게”를 “행정운영과장에게”로, “총무과장은”을 “행정운영과장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운영과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1.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p> <p>② 간사는 <u>자치행정과장</u>이 되고, 서기는 갈등업무담당자가 된다.</p> <p>③ (생략)</p>	<p>제8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도민소통과장</u>-----</p> <p>-----</p> <p>-----.</p> <p>③ (현행과 같음)</p>

### 2. 충청북도 공인조례

현행	개정안
<p>제4조(공인의 비치 및 사용)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공인은 <u>총무과</u>에, 보조기관, 그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이하 “소속행정기관”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기관장의 공인은 문서 취급부서에 각각 비치 사용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4조(공인의 비치 및 사용) ① -----</p> <p>----- <u>행정운영과</u>-----</p> <p>-----</p> <p>-----</p> <p>-----</p> <p>-----</p> <p>-----</p> <p>-----.</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등록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공</p>	<p>제8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인을 새긴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대장에 의하여 총무과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무과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정보화담당 부서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소속행정기관장의 직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인대장) ① 총무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시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관수자의 지정) ① (생략)

-----  
--- 행정운영과장-----  
-----.

③ -----  
-----  
-----  
-----  
----- 행정운영과 -----  
-----  
----- 행정운영과가  
-----  
-----  
-----  
-----  
-----  
-----  
-----  
-----  
-----.

제10조(공인대장) ① 행정운영과장-----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관수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인의 등록, 재등록,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공인의 관수자를 지정(재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수자를 지정하여 총무과장에게 알려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14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폐기 신고를 한 후 그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 총무과장은 이관받은 공인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대장 폐기공인란에 인영 및 기록사항을 기재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② -----  
-----  
-----  
-----  
----- 행정운영과장-----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인영의 보존) 행정운영과장-----  
-----  
-----  
-----.

제16조(공인의 폐기) ① -----  
-----  
-----  
-----  
----- 행정운영과장-----.

② 행정운영과장-----  
-----  
-----  
-----  
-----.

### 3.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2조(위원회 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도 <u>기획관리실장</u></p> <p>2. ~ 5. (생략)</p>	<p>제12조(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1. -- <u>과학인재국장</u></p> <p>2. ~ 5. (현행과 같음)</p>

### 4. 충청북도 도민대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7조(간사와 서기) ① (생략)</p> <p>② 간사는 <u>총무과장</u>이 되고 서기는 각 부문별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p>	<p>제7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행정운영과장</u>-----</p> <p>-----.</p>

### 5.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0조(심의회 구성) ①·② (생략)</p> <p>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u>총무과장</u></p> <p>2. (생략)</p>	<p>제10조(심의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1. ----- <u>행정운영과장</u></p> <p>2. (현행과 같음)</p>

## 6. 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심의회 운영) ①·② (생략)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u>자치행정과</u> 장이 된다. ④ (생략)	제14조(심의회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행정운영과</u> 장-----. ④ (현행과 같음)

## 7.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의장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u>행정부지사</u> 가 되고, 부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 <u>기획관리실장</u> ,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2. (생략) ④ ~ ⑥ (생략)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경제부지사</u> ----- -----. ③ ----- <u>과학인재국장</u> ----- -----. 1. 2.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 8.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충청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 ③ (생략)</p> <p>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u>기획·행정·경제·복지·문화 등 관련 실·국장</u>으로 한다.</p> <p>⑤ ~ ⑫ (생략)</p>	<p>제9조(충청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과학인재국장, 행정운영국장, 경제통상국장, 보건복지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u>-----.</p> <p>⑤ ~ ⑫ (현행과 같음)</p>

### 9. 충청북도 포상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u>총무과장</u>으로 한다.</p> <p>③ (생략)</p>	<p>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행정운영과장 또는 인사혁신과장</u>으로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 10.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위원회 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p>	<p>제5조(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장,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장, <u>유기농산과장</u></p> <p>2. (생략)</p> <p>④ (생략)</p>	<p>----- ----- ----- -----.</p> <p>1. ----- ----- ----- <u>스마트농산과장</u></p> <p>2.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	---

### 11.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생략)</p> <p>② 제1항제11호에 따라 참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장이 행사 1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료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u>총무과장에게</u> 요청하여야 하며, <u>총무과장은</u> 당일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조정 및 승인할 수 있다.</p> <p>③·④ (생략)</p>	<p>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행정운영과장에게</u> ----- ----- <u>행정운영과장은</u>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관리자는 주차장 안에서 특별한</p>	<p>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p>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장기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총무과장에게 방치차량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방치차량 이동의 퇴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후 청주시 관할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 보관시키도록 한다.

② (생략)

-----  
-----  
-----  
행정운영과장-----  
-----  
-----  
-----  
-----  
-----.

② (현행과 같음)

## 관련법령 발췌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부지사)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밑에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둔다.

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경제부지사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3. 정부, 국회, 언론, 사회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를 행정적·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경제통상국, 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바이오식품의약국, 환경산림국,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 및 그 밖에 경제관련 부서 업무에 관한 사항
2. 의회, 정부, 국회, 언론, 정당, 경제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행정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9조(과학인재국에 두는 과) ① 과학인재국에 과학기술정책과, 산업육성과, 청년인재육성과 및 방사광가속기추진과를 둔다.

② 과학인재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과학기술정책과장·산업육성과장·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청년인재육성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④ (생략)

⑤ 청년인재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공감정책 또는 그 사업 개발 및 지원 총괄
2.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관리
3.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평가
4.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
5.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6. 청년의 사회·문화 등 참여 확대
7. 청년희망센터 청년활동 지원 등 운영
8. 청년 및 대학생 정책네트워크 구축·운영
9. 대학 연계 청년정책 사업 개발 및 행사 지원
10.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11. 청년·학생 진로 지원기구 설치 및 운영 지원
12. 청년 취업·창업 지원 총괄
13.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일자리 육성
14.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15. 대학·기업 등 취업·창업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16. 청년 직업능력개발 추진
17. 청년창업 기반조성 지원
18.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19. 청년창업자 재도전 지원
20. 청년 복지정책 발굴 및 생활안정 지원
21. 교육관련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22. 초·중·고교생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3.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4.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25.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
26. 충북학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7. 과학기술기반 R&D과제 발굴 및 지원

- 28. 다부처(집단)연구사업
- 29. 연구과제 제안공모사업
- 30. 산학연 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및 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 31. 시험평가·인증·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지원
- 32. 과학기술진흥 업무
- 33. 지방과학기술인 육성
- 34. 전문경력인사 활용·지원 사업
- 35. 과학관등록 및 등록 변경
- ③ ~ ④ (생략)

**제12조(농정국에 두는 과)** ① 농정국에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산과, 농식품유통과, 축수산과 및 동물방역과를 둔다.

② 농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농업정책과장·스마트농산과장 및 농식품유통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축수산과장·동물방역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생략)

④ 스마트농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환경농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2. 유기농업 육성 및 유기농특화도 조성
3. 친환경농업지구·단지 조성사업 육성
4.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5. 유기농업단지 및 유기농생태마을 조성
6. 유기농 경영비 절감 시책 추진
7. 유기농업자재 지원(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유기농업자재 등)
8. 유기농업인 교육 및 인증활성화 지원
9. (사)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육성 및 지원
10. 유기농산물 소비확대·홍보
11. 민간인증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12. 스마트농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스마트농업 육성단지 확대에 관한 사항
14. 스마트농업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15. 스마트농업 생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6. 스마트농업 거버넌스 구성·추진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17. 식량 안정생산 등 종합계획 수립 추진
18. 농업기계화 지원
19. 비료, 작물보호제 등 농업자재 지원
20. 공익직불사업
21. 종자 생산·공급계획 수립
22. 농업 재해대책 추진
23. 쌀 전업농 육성 및 지원업무
24. 농작물 재해보험 업무
25. 농림축산식품부소관 국유재산 관리
26. 들녘경영체 육성
27. 고품질 쌀생산 관련 사업
28.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29. 과수생산 지원
30. 지역특화작목 육성
31. 원예특작 생산지원
32. 원예특작 시설물 재해대책
33. 종자생산 지원
34.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35. 농지 및 농업 용수시설의 재해방재 복구
36. 농업용 수리시설의 개·보수
37. 개간 시행계획 승인 및 기술 지도감독
38.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및 지도감독

- 39. 개간예정지 결정고시 및 허가
- 40. 환지계획 승인
- 41. 개간지, 농업목적 간척지의 유지 관리
- 42. 국·공유 미개간지의 이용·인가
- 43. 받기반정비사업 시행승인 및 기술지도·감독
- 44. 배수개선 사업
- 45. 지표수 보강개발
- 46.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비 지도점검
- 47. 한발대비 농업용수 대책
- 48. 농산사업소 업무 지도·감독
- 49.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농산지원분야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⑥ (생략)

제14조의2(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행정운영과, 도민소통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및 인사혁신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행정운영과장·도민소통과장·회계과장·인사혁신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생략)

④ 행정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 2. 각종 기념식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 3. 보안 및 자체 방호에 관한 사항
- 4. 민간인포상에 관한 사항
- 5. 청사내 자체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 6. 공무원의 복무제도에 관한 사항
- 7. 시·군 지방행정 시책 추진
- 8. 시·군 인사행정 추진

9. 도시군 인사교류 운영
10.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위치 및 구역조정
11.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12. 지방행정 시책추진 및 통리반 운영 지원
13. 시군 행정협의회 설치 운영 지원
14. 도지사 시군 방문 (초도·연두)
15.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6. 주민등록제도, 인감증명제도 관련 업무
17. 선거 및 국민·주민투표 관련 업무
18. 특수시기 종합대책 추진
19. 도 기구·정원 관리 및 시·군 기구·정원 운영 지도
20. 행정권한의 재분배 및 위임·위탁
21. 주민자치 관련 업무
22. 지방분권·사무이양·대도시특례 사무
23. 시·도 광역행정에 관한 업무
24. 수도권규제완화 대응논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5.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6.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7.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8. 세종시 연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9.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0.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31.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2.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33. 그 밖의 다른 실·국·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도민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론·동향 수렴에 관한 사항

2. 시·군간 협력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3.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4.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도민의 소리 직소창구 운영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 지원
8.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9.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10.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11.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1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에 관한 사항
13. 인권정책 시행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
14. 민간협력 종합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 충청북도시민사회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17.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법인 허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8. 자원봉사활동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9. 도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0. 생활공감정책 계획수립 및 홍보
21.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22.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23. 민원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4.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결과 통제에 관한 사항
25. 일반여권 및 긴급여권 발급에 관한 사항
26.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 ⑦ (생략)

⑧ 인사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보수제도 및 공무원연금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임용, 표창, 징계 및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성과계약 등 평가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의 신규·전직·승진임용시험 등 각종 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7. 각종 자격면허 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무원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후생복지 및 4대 보험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충청북도 비공무원 근로자 정원 및 현원 관리에 관한 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 사 유

- 본 조례안은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기 이전 부서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우리 도 자치법규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 작성자

행정국 행정운영과장 서동경